

인문지  
편

# 국내동향 해외동향





### 언론중재위, '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2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언론중재위가 건전한 SNS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국대 황용석 교수와 서울서부지법 조원철 부장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후곤 대검찰청 부장검사, 정민하 NHN정책협력실장,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용석 교수는 "SNS의 등장으로 현재의 언론구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SNS상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함으로 인해 오보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별로 SNS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철 부장판사는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로 SNS로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소개하고, "SNS로 인해 기존의 분쟁과는 전혀 새로운 양태의 분쟁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기 보다는 기존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법적규제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자들 간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SNS를 사용하는 문화 창출이 중요하다", "새로운 법적 규제보다는 SNS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규제에 맡기되, 무엇이 불법정보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SNS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환기시키며,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처벌 가능

소형 카메라(CCTV)가 내장된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가 늘어나면서 그간 블랙박스로 인한 승객의 음성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 시 관련 안내문 부착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택시CCTV 운영자에게 각도·방향 등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인터넷 게시 등 기본 목적이외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주행 중 도로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외부 블랙박스와 택시 안을 촬영하는 내부 블랙박스로 구분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블랙박스다. 내부 블랙박스는 택시 내부의 모든 상황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승객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의 중요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전체 교통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이 높아져 가해 차량이나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주행속도도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규정속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요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법원,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관련 발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안해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1월 24일 강용석 의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 의원은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여성 아나운서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아나운서라는 집단 명칭을 언급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된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집단을 지칭해 발생한 명예훼손은 집단의 크기와 성격, 집단 내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의 발언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이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 인정해 주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사재판부의 판결은 강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던 11월 10일의 형사사건 판결과 엇갈린 결정이다. 형사소송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항상 대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성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강 의원은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이다.

### 대법원,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안돼

10월 27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상대방을 ‘빠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 ‘대머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와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촉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가 ‘대머리’ 등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는 있을지언정, 이를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 日 언론, 범죄자의 미성년자일 때 전과 보도여부 두고 고심

살인미수혐의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전과(前科)를 보도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일본 언론의 판단이 양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9월 20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23세의 남성이 8월 31일 밤 도쿄 시부야의 한 라이브하우스(live-house)에 휘발유로 방화를 했고 살인미수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는 17세 때인 2005년에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에서 유치원 어린이를 쇠망치로 가격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소년원에 송치된 전과가 있었다.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와 통신사들 중 마이니치(毎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산케이(産經)신문, 교토(共同)통신, 지지(時事)통신은 이 혐의자의 과거 미성년일 때 저지른 범죄를 보도했으나, 아사히(朝日)신문, 도쿄(東京)신문, 닛케이(日經)신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마이니치는 전과·전력을 신중하게 취급하되 혐의자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당해사건과 공통점이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도하고,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보호처분 종료 후에도 이름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월등하게

우선할 때는 실명보도를 할 수 있다는 내부 보도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배경을 설명했다.

혐의자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중대사건을 일으킨 미성년자의 재범 사례들을 함께 보도하면서 이 혐의자의 갱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소개한 요미우리 신문은, 미성년일 때의 전과·전력의 보도는 '성인이 된 후에 범한 사건의 유사성,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배경이유를 밝혔다. 또한 교토통신은 '이번 사건의 배경을 탐지하는 객관적 사실로서 6년 전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지지통신은 '혐의자의 전과·전력은 당시 미성년이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의 경우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혐의자가 미성년일 때의 전과를 보도하지 않은 아사히 신문은 전과·전력의 보도로 인해 범죄자의 갱생(更生)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전과가 된 과거의 사건이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 정치인 또는 후보자로서 과거의 언동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기소된 경우에는 누범성(累犯性) 등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보도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신문은 '추후에는 과거 사건과의 관련성이 암시하는 바가 큰 사건이나, 혐의자의 진술이 진실로 판명된 사건에서는 전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일정 수준의 명예훼손 방지책을 강구한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인

8월 23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8일 일본 스모계에서 요코즈나를 지낸 다카노 하나와 하나타 게이코 부부가 상속문제와 승부조작 의혹을 보도한 주간신조(週刊新潮)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문사와 신문사 대표 사토 다카노부를 상대로 3,7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문사는 원고에게 325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반면, 신문사 대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간신조는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5건의 기사를 통해 다카노 하나가 부친의 스모연습장 토지건물 권리증을 무단으로 빼냈고, 형인 와카노 하나(前 요코즈나)와의 승부에서 승부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카노 하나가 TV프로에 출연해 승부조작과 관련한 발언을 한 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기사의 상당성을 인정했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 신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또한, 1심에서는 신문사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언론보도는 항상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문사 대표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사내체제를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명예훼손을 방지할

사내체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신문사 대표가 담당임원에게 매주 신문 교정본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사원주 소록에 고문변호사의 사무소를 기재하여 기자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기사 작성시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도록 상담체제를 갖추게 했다는 점을 들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신문사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고 평가할만하다'고 판단, 대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이다.

### 日 최고재판소,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책임 없어

신문협회보 10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5년 부도가 난 통신사업자 '헤이세이덴덴(平成電電)'을 둘러싼 투자사기사건과 관련, 동사 출자모집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의 책임은 없다고 9월 22일 판결했다.

헤이세이덴덴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본 출자자들은 출자모집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도쿄지법은 '광고를 본 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신문사측이 예견하는 일은 어려웠다'고 판단했으며, 201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지지, 최고재판소가 출자자들의 상고를 불수리 결정하면서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었다.

### 입증 없이 건물 붕괴 위험성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9월 13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라카와(荒川) 건설공업이 TV아사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TV아사히의 상고를 기각했다.

TV아사히는 2003년과 2004년 방송된 정보프로그램 「슈퍼모닝」과 「슈퍼채널」에서 아라카와 건설의 맨션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사지에 위험하게 흙을 쌓아 맨션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흙이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11월 1심과 2010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TV아사히가 맨션이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입증하지 않고 있고, ‘흙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도에 진실성이 없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통신사 제공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게재한 신문에 대해 상당성 부정

9월 27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나가노지방법원은 9월 16일 나가노시(長野市)의 한 식품도매회사가 자신이

납품한 팔소를 ‘독(毒)팔소’라고 표현한 산케이신문과 스포츠닛폰신문을 상대로 1,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팔소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단정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 원고에게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9월 이 업체의 납품처 종업원 2명이 팔소를 시식한 후 구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고, 두 신문사는 교토(共同)통신이 제공한 기사에 ‘독팔소’ 등의 제목을 붙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나가노시 보건소의 검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토를 일으킨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라 구토의 원인이 팔소가 아닌 팔소의 포장지 냄새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기사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만으로 피고가 팔소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미국동향]

### 블로거에 대한 취재원보호법(shield law) 적용여부 논란

The News Media & The Law(2011년 여름호, P26)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최근 뉴저지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누가 취재원보호법(shield law)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뉴저지대법원은 투머치미디어(Too Much Media)와 할(Hale) 사건의 판결에서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상에 글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취재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즉, 신문지상의 기자와 흡사한 온라인 뉴스 기자에 대해서는 취재원보호법이 인정되지만, 온라인 뉴스 기자가 아닌 블로거에 대해서는 항소 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취재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이었던 할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포르노사이트 개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투머치미디어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훔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할의 글은 블로그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으며, 일부 대중지에도 소개되었다. 이에 투머치미디어는 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할은 본인의 블로그에만 글을 올렸을 뿐인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널리 퍼진 것이라 주장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투머치미디어는 할에게 취재원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할은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전통적인 언론의 개념에 따른 전문적 저널리스트이거나 언론사를 통해 신원을 보증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명하며 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블로거인 할은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공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지양하기 위해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몇몇 언론사는 취재원보호법이 블로터 [Bloter - '블로거(blogger)'와 '리포터(reporter)'의 합성어로, 블로거의 정보 수집 능력과 리포터의 전문성 및 신속함을 동시에 갖춘 블로그 운영자들을 뜻한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무조건적으로 블로터에 대한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할에게 취재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할이 온라인 기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할이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였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다라도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뉴저지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블로그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기

준으로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온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브루클린대학 로스쿨 교수인 조나단 애스킨(Jonathan Askin)은 법원의 결정은 언론인 개념의 범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애스킨 교수는 주의회에서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그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영국동향]

###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 보도는 대중의 관심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부정

9월 30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보도에 의하면,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중앙 수비수인 리오 퍼디난드(Rio Ferdinand)는 선데이 미러(Sunday Mirror)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했다며 50,000파운드(한화 약 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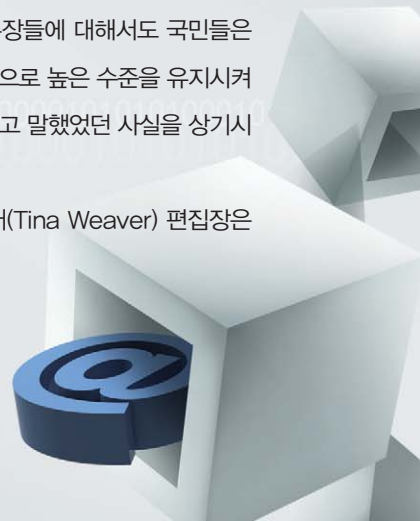
선데이 미러는 퍼디난드와 13년 동안 연인관계였던 캘리 스토리(Carly Storey)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6,000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지급하고, 캘리의 주장을 근거로 "영국의 캡틴, 리오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퍼디난드는 캘리와 헤어진지 이미 6년이 넘었는데, 그녀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데이 미러는 퍼디난드의 경우 맨유의 주장을 말할 만큼 유명 축구선수로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기에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또한 해당 기사는 퍼디난드의 사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그의 실체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니콜(Nicol) 판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가 원고의 사생활 권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 지고, 기사 제목이 일부 부적절하고 캘리의 주장을 언론사가 약간 각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 내용은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퍼디난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니콜 판사는 과거 퍼디난드가 "맨유의 주장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관념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이제까지 거쳐 간 주장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들이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시켜 주길 바라는 기대를 해 왔다"고 말했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선데이 미러의 티나 웨버(Tina Weaver) 편집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과거 퍼디낸드가 맨유 주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대중들은 과연 퍼디낸드가 자격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고, 퍼디낸드의 행동에 이목을 집중해 왔다. 법원이 이를 정의 관념에 맞추어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퍼디낸드의 변호인단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큰 실망을 했으며, 이번 결정은 일반적인 판례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며 “해당 기사의 내용들이 출판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적인 사생활인 것은 명백하다”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 페이스북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글 게재한

#### 남성에게 징역형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10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법원은 페이스북에 가톨릭과 켈트족에 대해 부정적 내용의 글을 게재한 스테판 버렐(Stephen Birrell)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스코틀랜드 축구팀 레인저스 FC의 서포터인 버렐은 셀틱 FC와의 경기 하루 전 날인 올해 3월 2일, 페이스북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가톨릭은 더럽다”고 게재했다. 또한 경기 이틀 후에는 “Fenian tattie farmers(‘감자 농부’라는 의미로 가톨릭 비하 발언)를 싫어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게재했다. 그는 자신이 종교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페이스북 남겼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의 변호사인 라인 맥리넨(Lain McLennan)은 “버렐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지는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래스고 법원은 “글래스고와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 버렐과 같은 행위는 이 사회 어디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버렐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버렐이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형량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판사 빌 토튼(Bill Totten)은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특정 대상을 정해 후원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남용되고 있다”며 “윤리적이고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포터를 가진 축구클럽이 없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버렐은 “닐 레논(Neil Lennon - 셀틱FC의 감독)이 관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년 동안 축구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향후 5년간 영국내에서 열리는 어떤 축구경기도 관람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 스코틀랜드 리그에 속해 있는 셀틱 FC와 레인저스 FC는 두 팀 모두 글래스고에 연고를 두고 있다. 그러나 셀틱 FC의 선수나 서포터들은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아일랜드계 사람들로, 로마가

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반면 레인저스 FC는 스코틀랜드계 사람들이 주류로 대부분이 개신교를 믿고 있다. 이로 인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연고지에 따른 다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분쟁, 즉 파벌주의로 인한 빈번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버렐이 구속되고 난 다음, 법무차관인 레슬리 톰슨(Lesley Thomson)은 “파벌주의는 현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들은 “스코틀랜드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소할 것”이라며 강한 수사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파벌주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축구장에서의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인종차별적 언급 혹은 증오를 표현하는 다른 수단’ 역시 공격적인 행위라고 인정된다. 법안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최대 5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 축구장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긴급적으로 제정되려 했으나,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에 대한 필요성에 전체적인 동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범죄자의 사생활 보호 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9월 27일자 보도에 의

하면, 영국의 통신위원회인 오프콤(Ofcom)은 제레미 밤버(Jeremy Bamber)가 스카이 TV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밤버는 1986년 자신의 양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정신분열증을 가진 여동생이 부모님을 살인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스카이 TV는 “엄마와 아빠를 살인하다, 제레미 밤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밤버의 사건기록과 관련 사진 등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의학 심리학자이자 기자인 케리 덴즈(Kerry Danes)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밤버는 “덴즈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는 나를 사이코패스로 묘사했으며 나에게 불평등하고 정확하지 않게 진술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방송 내용 중 범죄행위와 무관한 자신의 성적 취향 등이 보도되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불평등하게 대우받았으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프콤은 살인범인 밤버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나, 스카이 TV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할 권리가 있고 밤버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밤버의 사생활을 침해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